

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947
----------	------

제출일자 : 2021. 5. 17

제출자 : 달성군수



1. 개정이유

「지방세법」 개정(2020.12.29.)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주민세 과세체계를 정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주민세 세세목 변경 후 통합(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)

○ 균등분(개인) → 개인분

○ 균등분(개인사업자·법인), 재산분 → 사업소분

3. 조례안 : 따로 붙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(1) 「지방세법」 제74조

(2) 「지방세법」 제78조

(3) 「지방세법」 제81조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기타

(1) 신구조문 대비표 : 붙임 참조

(2) 입법예고(2021. 4. 7.~ 4. 27.)결과 : 의견 없음

- (3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- (4) 성별영향평가 : 원안동의
- (5) 부패영향평가 : 원안동의
- (6) 부서합의 : 해당사항 없음

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장제1절의 제목 “균등분” 을 “개인분” 으로 한다.

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6조(세율) 법 78조에 따른 개인분의 세율은 10,000원으로 한다.

제3장제2절의 제목 “재산분” 을 “사업소분” 으로 한다.

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7조(세율)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같은 조제1항 제1호 및 같은 항제2호 본문의 세율로 한다.

제8조 중 “재산분” 을 “사업소분” 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주민세 세율 등에 관한 적용례) 이 조례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일반적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제4조(다른 조례의 개정)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중 “재산분” 을 “사업소분” 으로 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장 주민세 제1절 균등분</p>	<p>제3장 주민세 제1절 개인분</p>
<p><u>제6조(세율) 법 78조에 따른 균등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u></p> <p>1. <u>개인의 세율</u></p> <p>가. <u>군에 주소를 둔 개인의 세율 :</u> 10,000원</p> <p>나. <u>군에 사업소를 둔 개인의 세율 :</u> <u>법 제78조제1항제1호나목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.</u></p> <p>2. <u>법인의 세율 :</u> 법 제78조제1항제2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.</p>	<p><u>제6조(세율) 법 78조에 따른 개인분의 세율은 10,000원으로 한다.</u></p> <p>1. <u><삭 제></u></p> <p>2. <u><삭 제></u></p>
<p>제2절 재산분</p>	<p>제2절 사업소분</p>
<p>제7조(세율)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<u>재산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.</u></p>	<p>제7조(세율)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<u>사업소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같은 항제2호 본문의 세율로 한다.</u></p>
<p>제8조(신고의무) <u>재산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, 지번, 용도, 층수, 건축물의 연면적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</u></p>	<p>제8조(신고의무) <u>사업소분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
□ 지방세법

[시행 2021. 1. 1.] [법률 제17769호, 2020. 12. 29, 일부개정]

제7장 주민세**제1절 통칙****제74조(정의)**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“개인분”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에 대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.
2. “사업소분”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및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.
3. “종업원분”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.
4. ~ 8. (생략)

제2절 개인분**제78조(세율)** 개인분의 세율은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한다.**제3절 사업소분****제81조(세율)** ① 사업소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

1. 기본세율
 - 가.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: 5만원
 - 나. 사업주가 법인인 사업소
 - 1)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이하인 법인: 5만원
 - 2)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: 10만원
 - 3)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: 20만원
 - 4) 그 밖의 법인: 5만원
2. 연면적에 대한 세율: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. 다만, 폐수 또는 「폐기물관리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에 대해서는 1제곱미터당 500원으로 한다.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본문의 세율을 각각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.
- ③ 삭제

